



제 429회 국회 (임시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영기술지도법인 등의 등록 자본금 요건 완화 등〉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79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경영기술지도법인 등의 등록 자본금 요건 완화	3
2.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 및 지도사의 가입 의무화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21.
3. 회부연월일 : 2025.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로서, 제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함.

지도사가 보다 조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을 설립·등록하려면 인원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행 요건은 지도법인의 조직화·대형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소득수준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과중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도사가 경영기술지도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자격사단체로서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완화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설립·등록을 촉진하고(안 제27조제1항),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두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지도사는 의무적으로 그 회원이 되도록 하여 국가자격사단체로서의 대표성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Ⅲ. 검토의견

1. 경영기술지도법인 등의 등록 자본금 요건 완화

현행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¹⁾(이하 “지도사”라 함)가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이하 “지도법인”이라 함)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법인은 사원 등의 요건²⁾과 자본금 요건³⁾을 갖추어 중소벤처

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지도
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지도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원 등) ① 지도법인의 사원은 제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여야 한다.

② 지도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지도법인의 이사였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였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지도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지도사(제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를 말한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지도사(이하 “소속지도사”라 한다)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지도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지도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10조에 따라 지도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도법인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자본금 등) ① 지도법인의 자본금은 <u>2억원</u> 이상이어야 한다. ②·③ (생략)	제27조(자본금 등) ① ----- ----- <u>1억원</u> ----- ---. ②·③ (현행과 같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등록된 지도법인은 유한회사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와 한국경영기술 등 2개로 각 법인의 사원수는 각각 5명, 17명이고, 자본금은 각각 2억원, 2억 1,000만원임.

[표 1] 현행법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 현황

법인명	주요업무	구성원	자본금	자산총액 (‘24년말)	부채총액 (‘24년말)
유한회사 한국중소기업 지원센터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전반	사원 5명 (이사 3명)	200백만원	370백만원	453백만원
한국경영기술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전반	사원 17명 (이사 3명)	210백만원	172백만원	5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자본금 등) ① 지도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법인이 제2항에 따른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증자를 명할 수 있다.

관세사, 세무사 등 유사 국가자격제도를 살펴보면, 2025년 기준으로 관세법인은 150개, 세무법인은 799개, 특허법인은 224개, 회계법인은 262개 등이 등록되어 있어, 지도사에 비해 자격사의 법인화가 활성화되어 있음.

[표 2] 유사 국가자격제도 법인 등록·인가 현황

구분	등록인원(명)	유효인원(명) ¹⁾	등록·인가 법인 현황(개)
지도사	17,270	5,074	2
관세사	2,290	2,271	150 ²⁾
세무사	17,067 ³⁾	16,318	799
변리사	11,179	4,797	224
회계사	27,672	18,969	262
변호사	30,996	24,379	1,558
노무사	5,660	4,274	986

주: 1) 휴업 중이거나 갱신 등 등록 외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인원

2) 본사 수를 의미함. 분사무소(332개)를 포함할 경우 482개

3) 세무사등록부(한국세무사회, '25.8.31기준) 등록 기준임.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한국공인회계사회, '24.12.31기준) 및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국세청, '24.12.31기준)에 등록된 인원을 포함하면 40,959명

4) 2025년 9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관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제출자료를 재정리

개정안은 지도법인 설립 자본금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도사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초기 설립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던 지도사들의 법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바,

법인화를 통해 개인 사업자 활동에 비해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법인 소속 지도사간의 협업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규모 지도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경영·기술 진단 및 지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법인의 자본금은 운영상 손실발생시 위험을 흡수하고, 업무상 과오로 인한 배상책임소송 발생 시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담보가 되므로, 자본금을 하향 조정할 경우 운영손실 및 법적분쟁 등 발생시 법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이 높아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고객이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도법인의 재무적 안정성, 신뢰성 및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자본금 규모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국가자격제도상 법인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살펴보면, 관세법인은 2억원, 세무법인은 2억원, 회계법인은 5억원, 법무법인은 5억원 등으로 현행 지도법인의 최소 자본금과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합명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노무법인⁴⁾과 특허법인⁵⁾은 법인

등록과 관련한 최소 자본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표 3] 유사 국가자격제도상 법인의 최소 자본금 요건

구 분		인적요건	최소 자본금
유한회사	관세법인	▪ 총 관세사 5명 이상 - 이사 3명 이상	2억원
	세무법인	▪ 총 세무사 5명 이상 - 이사 3명 이상 - 사원 3명 이상	2억원
	특허법인 (유한) ⁶⁾	▪ 총 변리사 5명 이상 - 이사 3명 이상	3억원
	회계법인	▪ 총 회계사 7명 이상 - 이사 3명 이상 - 사원 3명 이상	5억원
	법무법인	▪ 총 변호사 7명 이상 - 이사 3명 이상	5억원
합명회사	노무법인	▪ 총 노무사 2명 이상	규정없음
	특허법인	▪ 총 변리사 3명 이상	규정없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현행법은 지도법인의 직무 수행 중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⁷⁾하도록 하고 있어, 최소 자본금 요건 외에 지도법인의 신뢰성 및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관세법인⁸⁾, 세무법인⁹⁾, 특허법인¹⁰⁾ 등 유사 국가자격제도에도 동

4)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준용규정) ① 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변리사법」

제6조의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② 특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변리사법」

제6조의22(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② 특허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지도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일하게 존재하는 조항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 제정¹¹⁾ 당시 자본금 규모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¹²⁾에서 “소득 수준이 관세사나 세무사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추후 경영지도법인화가 되게 되면 조직화, 대형화를 통해서 효율성 있는 지도가 필요하고, 대외 공신력 등의 기본적인 수준을 고려해서 타 자격증처럼 최소자본금으로 2억원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제정 당시 경영지도법인의 조직화·대형화 유도, 대외 공신력 및 업무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타 자격증 수준(2억원)으로 설정하였으나, 법 시행(‘21.4월)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경영지도법인은 단 2개로서, 지도법인의 설립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지도

8) 「관세사법」

제17조의5(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관세법인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9) 「세무사법」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0) 「변리사법」

제6조의18(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1) 2020.4.7. 공포, 2021.4.8. 시행

12) 제371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19년11월28일) 회의록 참고

법인의 경우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완화한다고 해도 대외 공신력이나 업무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임.

2.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 및 지도사의 가입 의무화

개정안은 기존의 임의 설립 단체였던 “경영기술지도사회”를 법정단체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로 전환하고, 지도사의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지도사회의 설립) ① <u>지도사는 지도사의 품위유지, 자질향상,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u> ② <u>지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u> ③ ~ ⑤ (생략)	제38조(지도사회의 설립) ① <u>지도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를 둔다.</u> ② ----- <u>하며,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지도사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유사 국가자격제도를 살펴보면, 현재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은 「변호사법」 등 각각의 개별 근거 법률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자격사단체를 두도록 하고, 회원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표 4] 유사 국가자격제도상 자격사단체 설립 및 회원가입 관련 규정

구분	자격사단체	회원가입 의무화
변호사	「변호사법」 제64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u>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u>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제78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u>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u>	「변호사법」 제68조(가입 및 탈퇴) ①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u>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u> 제79조(설립 절차) <u>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u>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세사	「관세사법」 제21조(관세사회의 설립)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u>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u>	「관세사법」 제21조(관세사회의 설립)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u>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u>
세무사	「세무사법」 제18조(설립과 감독)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u>한국세무사회를 둔다.</u>	「세무사법」 제18조(설립과 감독)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u>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u>
변리사	「변리사법」 제9조(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①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u>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둔다.</u>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u>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u>

구분	자격사단체	회원가입 의무화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41조(목적 및 설립) ①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u>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公認會計士會"라 한다)</u> 를 둔다.	「공인회계사법」 제42조(입회의무)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u>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u>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①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u>공인노무사회를 둔다.</u>	「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u>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u>
행정사	「행정사법」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u>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u> 를 둔다.	「행정사법」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u>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u>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검색

개정안은 이와 유사하게 지도사회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도사의 지도사회 가입을 의무화하여 지도사회의 국가자격사단체로서의 대표성 확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연수·관리, 권익 보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제도는 위의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등과는 달리 자격이 있는 자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적 자격 방식으로 운영¹³⁾되지 않고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의 경우처럼 자격증 미보유자의 업무수행을 금지하지 않는 비독점적 자격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비독점적 자격 방식으로 운영되는 자격제도의 경우 대부분 자격사단체에 대한 가입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관세사법」 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공인회계사법」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사법」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표 5] 국가자격제도의 유형

구 분	독점적 자격	비독점적 자격
목 적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자격자에게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그 업무를 자격자의 관리·감독 하에 둠으로써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이나 재산상 손해발생을 예방	기술·기능 등을 국가가 공인함으로써 직업능력 향상을 기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장
업무제한	비자격자의 업무수행이 금지	자격증 미보유자의 자유로운 업무수행
명칭사용	자격명칭의 독점적 사용	자격명칭의 독점적 사용
근거법률	「변호사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등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비 고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유통관리사, 가맹거래사, 청소년지도사 등

[표 6] 자격의 독점적 운영 여부에 따른 자격사단체 가입강제 현황

구 분	자격사단체의 가입강제	자격사단체의 가입재량
독점적 업무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행정사	-
비독점적 업무	-	기술사, 유통관리사 ¹⁾ , 가맹거래사 ¹⁾ , 청소년지도사 ¹⁾

주 1) 해당 자격사는 소관 법령에 자격사단체와 관련된 조항이 없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현행법 제38조에 따라 지도사가 설립한 지도사회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1개로서, 2025년 현재 지도사 등록 전체 인원 17,270명(경영지도사 12,852명, 기술지도사 4,418명) 중 18.4%인 3,184명(경영지

도사 2,769명, 기술지도사 415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회원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미가입 지도사의 회비¹⁴⁾납부 의무 발생 등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7]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현황

○ 명 칭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 사단법인), 경영기술지도사법 제38조
○ 설립일자 : 1986. 7. 30 / ○ 주 소 :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203
○ 회원규모 : 3,184명(경영지도사 2,769, 기술지도사 415)
* 지도사 등록인원 17,270명 대비 가입율 18.4%
○ 주요업무 : 회원관리, 지도사교육, 컨설팅 사업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로, 현행법 제정 당시 제정안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두도록 하고 지도사 및 지도법인의 지도사회 가입을 강제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과 같이 임의설립 단체인 경영기술지도사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의 가입강제 규정을 삭제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당시 제정안은 자격증 소지자만 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점적 자격제도 도입을 규정하면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설립과 지도사 등의 지도사회 의무가입 등을 규정하였으나,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지도사 제도가 19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경공업 공장 등의 생산라인에 대해 관련 산업 은퇴자 및

14)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경영지도사회의 회비는 입회비 50만원, 연회비 20만원임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어 자격증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비독점적 자격제도를 유지¹⁵⁾하면서 경영기술지도사회를 임의설립 단체로 수정하고 지도사의 가입강제 규정을 삭제하였음.

개정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지도사와 같이 비독점적 자격인 기술사, 유통관리사, 가맹거래사 등은 단일 법정단체 및 회원 가입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지도사회 가입을 강제할 경우 미가입자인 지도사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부동의한다는 입장임.

그 밖에 개정안은 부칙에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의무가입 전환에 따른 기존 지도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회원가입 유예기간을 두는 등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의무가입을 수용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로 보임.

1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 전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에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음

문 의 처
02) 6788-5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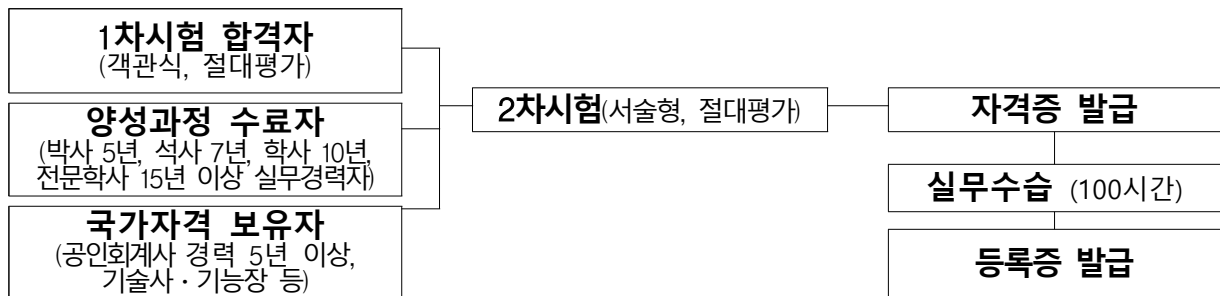
[참고자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 개요

□ (개요)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에 대한 진단 및 지도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86년부터 경영 및 기술 지도사 자격제도를 운영

* (주요연혁) 통상산업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지도사 소관 부처 변경('96.2월) → 합격증에서 지도사 자격증으로 발급('04.3월) → 개별법으로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21.4월)

□ (자격시험) 1차(객관식, 6과목), 2차(논술형, 3과목)로 구분 시행하며, 2차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100시간)을 이수해야 지도사로 등록 가능

*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 국가자격보유 후 경력자는 1차시험 면제



□ 연도별 지도사 등록 현황

(단위: 명)

구 분	'89~'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계
경영지도사	9,699	254	169	164	235	214	380	179	166	182	160	285	196	195	215	159	12,852
기술지도사	4,215	16	14	9	11	10	8	11	11	15	28	14	17	9	11	19	4,418
계	13,914	270	183	173	246	224	388	190	177	197	188	299	213	204	226	178	17,270

□ 2025년 현재 자격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인원

○ 등록인원 17,270명 중 업무정지*(12,196명)를 제외한 등록유효자 5,074명

* '업무정지'는 자격증 갱신(5년)을 득하지 않은 경우임

□ 분야별 경영지도사 등록현황

(단위 : 명)

구 분		등록인원	업무정지	등록유효
경영 지도사	인적관리	2,139	1,479	660
	재무관리	6,267	4,447	1,820
	생산관리	1,107	757	350
	마케팅	3,339	1,754	1,585
소 계		12,852	8,437	4,415

□ 분야별 기술지도사 등록현황

(단위 : 명)

구 분		등록인원	업무정지	등록유효
기술 지도사	정보기술관리	606	479	127
	기술혁신관리	19	-	19
	기계분야	1,021	882	139
	금속분야	315	275	40
	전기전자	635	588	47
	섬유분야	129	120	9
	화학분야	332	310	22
	생산관리	974	751	223
	환경	4	3	1
	생명공학	5	1	4
	기타	378	350	28
소 계		4,418	3,759	659